



제417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군대원 등에 대한 훈련비 지급〉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85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53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 취지	4
2. 검토 의견	5
※ 참고자료	
□ 예비군 훈련 보상비 외국사례	11

I . 제안경위

1.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0785)

가. 발 의 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6. 21.

다. 회 부 일: 2024. 6. 27.

2.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1453)

가. 발 의 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7. 8.

다. 회 부 일: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2.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취지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이하 “강대식의원안”)과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송옥주의원안”)은 내용상 관련성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검토함.

□ 개정안들은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되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강대식의원안) 또는 훈련에 따른 손실 보상비(송옥주의원안)를 지급하려는 것임.

두 개정안의 차이점으로는 강대식의원안은 훈련비 지급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였고, 송옥주의원안은 훈련에 따른 손실 보상비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것임.

[개정안 비교표]

구분	현행	강대식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지급항목	급식비 그밖의 실비(교통비)	급식비 그밖의 실비 훈련비	급식비 그밖의 실비 손실보상비
규정형식	임의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2. 검토 의견

□ 개정안들은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훈련(동원미참가자 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을 말함) 시 급식비, 교통비 외에 훈련비(강대식의원안) 또는 훈련에 따른 손실 보상비(송옥주의원안)를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강대식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제11조(실비 <u>변상</u>)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 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u>변상</u> 을 할 수 있다.	제11조(<u>훈련비 등</u>) --- ----- ----- ----- ----- --- <u>훈련비의 지급</u> <u>및 그 밖의 실비(實費)</u> <u>변상</u> ----- ---.	제11조(실비 <u>변상 등</u>) ① ----- ----- ----- --- <u>급식과</u> ----- ----- <u>하여야 하며, 동원 또는 훈련소 집된 예비군대원의 손실에 대하여</u> <u>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급식, 실비변상,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비군훈련은 크게 병력동원훈련¹⁾과 동원미참가자 훈련(이하 ‘동원미참훈련’이라 한다)·기본훈련·작계훈련(이하 ‘일반훈련’이라 한다)²⁾으로 구분되는데 병력동원훈련은 「병역법」 제50조³⁾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고, 일반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⁴⁾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임.

[예비군훈련 구분 현황]

구 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동원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병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5~6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7~8년차		미이수 훈련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2박3일		
	7년차 ~ 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 자료 : 국방부

- 1) 예비군 1년차~4년차 중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동원사단 등 군 부대로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
- 2) 예비군 1년차~4년차 중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지정을 받지 못한 인원이 지역별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하 ‘동원미참훈련’이라 한다) 및 예비군 5년차~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훈련·작계훈련
- 3)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 4)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는 훈련 근거 법률인 「병역법」 제52조제1항⁵⁾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 외에 소정의 훈련보상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예비군법」에 훈련 근거를 두고 있는 일반훈련(숙영을 하는 동미참훈련은 제외⁶⁾)은 실비인 교통비·식비 외에 훈련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비군훈련 실비 등 지급 현황]

구 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보상비	숙영(82,000원)	-숙영: 82,000원 -출퇴근: 미지급	-	-
교통비	거리별요금 (156원/km)	-숙영: 유류비+통행료(900원) -출퇴근(4일) 1일기준 과학화 : 131.82원/km 비과학화 : 8,000원	8,000원	-
급식비	부대급식	-숙영: 부대급식 -출퇴근(4일) 도시락(8,000원) ⁷⁾	도시락 (8,000원)	도시락 (8,000원)

* 동원훈련의 교통비는 입영 시에는 병무청에서, 퇴소 시에는 국방부에서 지급

* 자료 : 국방부

5) 「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6) 동미참훈련 중 숙영을 하는 2박 3일 대상자(군간부, 공군 병)에 대하여는 훈련보상비 지급

7) '96년부터 지급(도시지역: 1,500원, 농촌지역: 2,000원)하였으며, '24년 현재 구분없이 도시락(8,000원 상당 - 예비군대원이 도시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8,000원 현금 지급) 지급

□ 개정안들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경우 실제적인 훈련 내용 및 의무 이행자의 훈련에 따른 부담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수행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동원 또는 훈련소집으로 발생하는 생업 중단 등 개인이 감내하는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군법」에 따른 일반훈련 시에도 훈련비 또는 훈련에 따른 손실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고자 개정안은 2007년 최초 발의 이후 계속되어 왔음.⁸⁾

[제21대 국회 「예비군법」 개정안 제출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발의일	의안번호	대표 발의	결과
'20.08.03.	제2102638호	장제원 의원	소위 보류 ('21.02.19./'22.11.15.)
'21.08.30.	제12301호	김경협 의원	소위 회부 ('21.11.16.)
'21.12.23.	제2114075호	강대식 의원	소위 회부 ('22.08.29.)
'22.11.18.	제18332호	조웅천 의원	소위 회부 ('22.12.28.)
'23.01.03.	제2119312호	윤후덕 의원	소위 회부 ('23.02.17.)

* 자료 : 국방부

8) 제17대 (1회), 제19대 (1회), 제20대 (3회), 제21대 (5회) 총 10회 발의

□ 다만, 송옥주의원안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 참가자 개인별 손실보상금 산정의 어려움,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되며,

또한, 예비군훈련은 「헌법」상 병역 의무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는 ‘훈련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강대식의원안은 훈련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현행 「예비군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구성하였고, 송옥주의원안은 강행규정으로 조문을 구성하였는데,

임의규정으로 조문 구성 시 행정상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여 제반 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훈련비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⁹⁾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 및 병무청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대원에게 국가가 급식, 교통비 외에 적정 금액의 훈련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일반훈련’은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고 현재도 식비·교통비 등 충분한 실비 보상을 하고 있으며, ‘일반훈련’에 대한 훈련보상비를 신설하면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¹⁰⁾

9) 강행규정으로 조문 구성 시는 반대의 효과가 예상됨.

[훈련보상비 지급 관련 국방부 2025회계연도 예산요구(안)¹¹⁾]

구 분	산출근거	예산액(억원)
합 계	1일단가 × 1일훈련시간 × 훈련일수 훈련인원	531
동미참훈련 (1일, 15,000원)	15,000원 × 4일 × 344,448명	207
기본훈련 (1일, 15,000원)	15,000원 × 1일 × 921,972명	138
작계훈련 (1일, 15,000원)	15,000원 × 2일 × 620,946명	186

* 자료 : 국방부

문 의 처
02)6788-5307

10) 기획재정부는 최근 훈련비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동미참훈련에 대한 훈련비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파악됨.(예산 규모는 미정)

11)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황이며, 두 부서간 일반훈련 훈련보상비 정부 예산 반영 협의중

※ 참고자료

□ 예비군 훈련 보상비 외국사례

구 분	미 국	이스라엘	독 일
복무여건	지원에 의해 2~4년 예비군 복무	현역 2~3년 복무 후, 38~44세까지 예비군 복무(의무)	자원복무제: 현역 최대 23 개월, 예비군 45세까지
훈련기간	· 주말소집 훈련 (월 1회 2일, 16H) · 연례훈련(2주간 동원 소집 훈련)	· 제1예비역(연 55일), 제2예비역(연 38일) · 소집훈련, 매월 비상 소집, 동원훈련	· (병)4년간 24일 · (하사관)7년간 25일 · (장교)10년간 84일
훈련보상	· 현역급여 수준 지급 (1일 평균 병 18만원, 장교 50만원 수준) * 주특기·동원기간· 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	· 평시 개인별 사회소득 수준 지급 (기본급+특별급, 기본급: 1일 최저 8만원) * 특별급 : 근무기간별 차등	· 현역 계급별 급여 수준 지급 (1일 평균 20만원 수준) * 동원으로 직장에서의 마수령 월급 100% 보장, 철도 무료 이용 등